

■ 최신 판례 ■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성과급을 감액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라는 사례

[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319922 판결]

이광선 변호사 | 신혜주 변호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에게만 성과급과 격려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라고 본 대구지방법원 판결입니다.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2010년부터 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24일에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진정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감액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부속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1합의'). 이어서 '지급일 이전 1년간 회사나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 등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자는 민원의 결과나 취하 등과 관계 없이 성실 안정 격려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2합의').

피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2013년 9월 및 10월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각 제기하였고, 일부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원고들은 2014년 10월, 2016년 12월, 2017년 1월에 대구지방법원 형사부지청에 피고 회사 등을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각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먼저 성과급 등의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회사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2합의 중 소 제기 등의 사유로 성과급을 감액 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

도록 규정한 부분은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이는 노동 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법률행위의 내용 또는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